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6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4

1.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등 ··· 4

2.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박성훈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윤덕의원안) ····· 40

Ⅰ.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

(3) 회 부 일 : 2024. 8. 2.

나.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됨.

원자력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력의 핵심 생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원자력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므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초격차' 제작기술 및 제작시설 확보와 차세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특히, 미래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필

요가 있음.

한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세가 꺾여 현재는 국내 개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회까지 줄면서 팀은 재정적 부담과 해체, 선수 및 코칭스테프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 등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산업 규모는 감소하고 산업생태계는 열악한 상황임.

이에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투자·운영에 드는 전반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선순환 및 선수단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나.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안 제24조제1항).

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라.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현행 특례를 확대(안 제104조의27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등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1]은 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0%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하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5~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2]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1]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15 [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중소기업 졸업 후 ~3년)15%,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10%, (중소기업 졸업 후 6년~)8%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임.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이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4%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었음.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4. 2. 29.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분야	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분야	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4. 2. 29.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3	1,08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2	29,910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29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134	41,590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402	42,88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370	26,931	1	11
20억원 이하	6,119	56,352	4	36
50억원 이하	11,814	203,843	17	536
100억원 이하	8,470	254,558	32	1,665
200억원 이하	5,506	278,567	57	2,980
300억원 이하	2,090	160,621	44	2,761
500억원 이하	1,797	198,988	93	7,155
1,000억원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5,000억원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5,000억원 초과	1	3,388	427	2,646,583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063	2,172	2	104
20억원 이하	874	3,752	2	84
50억원 이하	1,744	16,690	9	80
100억원 이하	1,392	28,987	22	240
200억원 이하	1,520	59,975	76	2,187
300억원 이하	789	48,214	52	2,327
500억원 이하	757	70,227	98	3,921
1,000억원 이하	610	102,277	219	12,769
5,000억원 이하	u	56,247	833	138,317
5,000억원 초과	u	12,759	439	1,218,875
합계	8,926	401,300	1,752	1,378,902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황정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1)]</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 colspan="2">최대 2 8～15[2)]</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td><td>40</td><td>최대 10</td></tr>
</table>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2024.12.31.
</td><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황정아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최대 2</td><td>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30</td><td>5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6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35～50%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최대 2</td><td>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5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연장
- 2026.12.31.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 2027.12.31.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029.12.31.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2030.12.31. (김영진의원안) - 2034.12.31.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28.12.31. (박지혜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34.12.31. (박수영의원안)

* 김정재의원안 2024. 6. 13. 발의(의안번호 46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황정아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0),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3),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최민희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97),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안도걸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23),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2024년)을 연장하여 주요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황정아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30~4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35~50%, 중소기업 50~6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

국가전략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

의원안은 대·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60~70%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최은석의원안·천하람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의원안·정성호의원안·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최민희의원안·허성무의원안·안도걸의원안·신영대의원안·정태호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종양의원안·윤준병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김영진의원안은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정재의원안·김태년의원안·이병진의원안은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모두 연장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만 연장	-	-	박지혜의원안	-	-	박수영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과기부에서 선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3] 분야 기업을 조사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이 기술 성장성, 성공한 R&D 과제수, 최신특허 인용 등 혁신활동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4]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업의 조세 지원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기업은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연구개발 활동 재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5]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외부효과도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세제지원이 R&D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둘째, 주요국들이 주요기술에 대한 R&D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3)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

4) KISTEP,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2023. 5.

5) 소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일반적으로 R&D 인력 충원에 활용하고, 중기업 이상 절감된 비용을 R&D 인력 충원과 R&D 설비 투자에 활용하였음.

예를 들어, 대만은 2023년에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R&D 비용의 2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주요국 반도체 인센티브(투자대비 %)]

구 분		한국	대만	미국	일본
세액 공제	R&D	30~50	25	(증가분) 20	1~17
	투자	15~35	5	25	-
투자보조금		-	-	최대 15	33~50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 6.)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어,[6] 동 제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둘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공제율 수준이 높고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세수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성장·원천기술은 기술분야가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6)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 9.

2017년 11개 분야·157개 기술에서 2024년 14개 분야·270개 기술로 늘어났고, 국가전략기술 역시 2022년 3개분야·36개 기술에서 2024년 7개 분야·66개 기술로 늘어나 세수감소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일반 기술의 경우, 2022년 조세지출액이 2018년 대비 1,305억원 증가(2조 1,553억원 → 2조 2,858억원)하였으나, 신성장·원천기술은 7,344억원 증가(1,447억원→8,791억원)하였고,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조세지출규모가 4,524억원에 달하여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추이]

구 분	2018	2022	증감
일반	2조 1,553억원	2조 2,858억원	1,305억원
신성장·원천기술	1,447억원	8,791억원	7,344억원
국가전략기술	-	4,524억원 (신설)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셋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2조 542억원, 2035년 2조 6,8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23조 5,486억원(연평균 2조 3,5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기술별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연도	2026	2027	…	2034	2035
신성장·원천기술	-8,569	-8,826	…	-10,855	-11,181
국가전략기술	-11,972	-12,331	…	-15,166	-15,621

자료: 예산정책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총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542	-21,158	-21,793	-22,446	-23,120	-23,813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4,528	-25,264	-26,021	-26,802	-235,486	-23,549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황정아의원안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기술유형별로 R&D 세액공제율을 10~2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4조 5,329억원, 2030년 1조 7,43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 4,462억원(연평균 3조 4,8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또한, 예산정책처는 박수영의원안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1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1조 6,253억원, 2035년 2조 1,206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8조 6,319억원(연평균 1조 8,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다섯째,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분야를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해외 주요국 사례는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처럼 R&D 세액공제율을 기술 범주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구조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각 범주의 기술을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다.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이병진의원안(2125), 이병진의원안(2173), 정진욱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김종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부안, 박지혜의원안, 정성호의원안(4780), 허성무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
<td>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4</td></tr>
</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td>
<td>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 상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10</td></tr>
</table>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25</td><td>35</td><td>4</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td><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이병진의원안(2173))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30</td><td>40</td><td>4</td></tr>
</table>
-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신영대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15</td><td>20</td><td>25</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25</td><td>30</td><td>4</td></tr>
</table></td></tr>
<tr><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24. 12. 31.</td><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5. 12. 31. (정진욱의원안)
- 2026. 12. 31. (김상훈의원안)
- 2027. 12. 31.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허성무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2028. 12. 31. (조지연의원안, 박지혜의원안)
- 2029. 12. 31. (김종양의원안)
- 2030. 12. 31. (이상식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 2034. 12. 31.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이병진의원안(2125), 정성호의원안(4780))
- 2039 12. 31. (천하람의원안)</td></tr>
</table>

* 박충권의원안 2024. 5. 31. 발의(의안번호 67), 김성원의원안 2024. 6. 18. 발의(의안번호

578), 이상식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3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김상훈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7),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51), 조지연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1980),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이병진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73),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정진욱의원안 2024. 8. 20. 발의(의안번호 3009),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정성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80),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며 적용기한(2024년 말)을 연장하려는 것임.

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 이상식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을 6%p(4%→10%) 상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0%p(대·중견 15%→25%, 중소 25%→35%) 상향하려는 것이며,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73)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5%p(대·중견 15%→30%, 중소 25%→40%) 상향하려는 것이고, 신영대의원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 3%→15%, 중견 6%→20%, 중소 12%→25%)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중견 15%→25%, 중소 25%→30%)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정진욱의원안은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고, 김상훈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며, 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허성무의원안·정태호의원안·신영대의원안은 2027년

까지 3년 연장하고, 조지연의원안·박지혜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며, 김종양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이상식의원안·박충권의원안·김영진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고, 김성원의원안·김태년의원안·박수영의원안·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4780)은 2034년 말까지 10년 연장하며, 천하람의원안은 2039년 말까지 1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2039년
개정안	정진욱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박수민 의원안, 정부안, 허성무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조지연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김종양 의원안	이상식 의원안, 박충권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1951)	김성원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4780)	천하람 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 제도가 시

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2022년에는 0.51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고 2023년에는 0.54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응답결과가 나타났음.[7)]

즉, 동 제도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 간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들 역시 선제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주요국의 전략산업 지원현황]

구분	지원내용
미국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CHIPS Act)
대만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
EU	'30년까지 민간투자에 430억€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The European Chips Act)
일본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세제지원(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세지출 평가서

셋째,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면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 동 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에서 총자산의 성장률이 기타 산업들에 비해 3.3~3.4%p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투자결정은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의 현금보유수준, 사업리스크, 부채비율, 대내외 경영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성장률에 대한 계수가 대체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8]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경우, 2026년 4,821억원, 2035년 6,29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세수가 10년간 연평균 5,528억원(총 5조 5,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9]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9)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4,821	-4,965	-5,115	-5,268	-5,427	-5,590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5,758	-5,931	-6,109	-6,292	-55,275	-5,528

주)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일반시설,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간 공제율이 차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범주를 적정하게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등

현 행	개정안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제24조, 제130조)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제24조, 제130조)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추가 (김태년의원안, 최민희의원안) - 인공지능 추가 (이인선·조승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방위산업 추가(김종양의원안) - 방위산업, 인공지능 추가(정성호의원안(2063), 정태호의원안) -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 추가(김영진의원안) - 태양광, 풍력 추가(박지혜의원안) - 원자력 추가(박성훈의원안) - 미래형운송수단 추가(박수민의원안) -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 포함 명확화 (허성무의원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제130조) -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의 예외 적용(정성호의원안(4568))

*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김종양의원안 2024. 7. 11. 발의(의안번호 1644), 이인선·조승래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2012) 정성호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3),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최민희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97),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정성호의원안 2024. 10. 4. 발의(의안번호 4568),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안도걸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23),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1) 원자력 분야 추가 (박성훈의원안)

□ 원자력발전은 2023년 기준 총 전력생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발전비중인 29.6%에 비해 1.1%p 증가하였음.

국내 원자력 산업의 총 매출액은 2022년도 25조 4,234억원으로 전년도 21조 5,860억원 대비 3조 8,374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원자력발전사업자는 20조 1,648억원(79.3%), 원자력공급산업체는 4조 1,282억원(16.2%), 연구·공공기관은 1조 1,304억원(4.4%)을 차지하고있음.[10)]

2022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9조 2,968억원으로 2021년도 8조 6,501억원 대비 6,467억원이 늘어 7.5% 증가하였음.

[원자력산업분야 투자액 규모 현황]

연도	2021	2022	증감액 (증감률)
원자력발전사업자	7조 2,111억원	7조 8,216억원	6,105억원 (8.5%)
원자력공급산업체	1,438억원	2,485억원	1,047억원 (72.8%)
연구·공공기관	1조 2,953억원	1조 2,267억원	△686억원 (△5.3%)
합계	8조 6,501억원	9조 2,968억원	6,467억원 (7.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2년에는 10개국에 78건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수출액은 264,152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 대비 수출건수가 51건 증가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24. 4.

하고 수출액이 261,091만 달러 증가한 수준임.[11)]

[원자력산업분야 해외수출 계약금액 및 건수 추이]

(단위: 만달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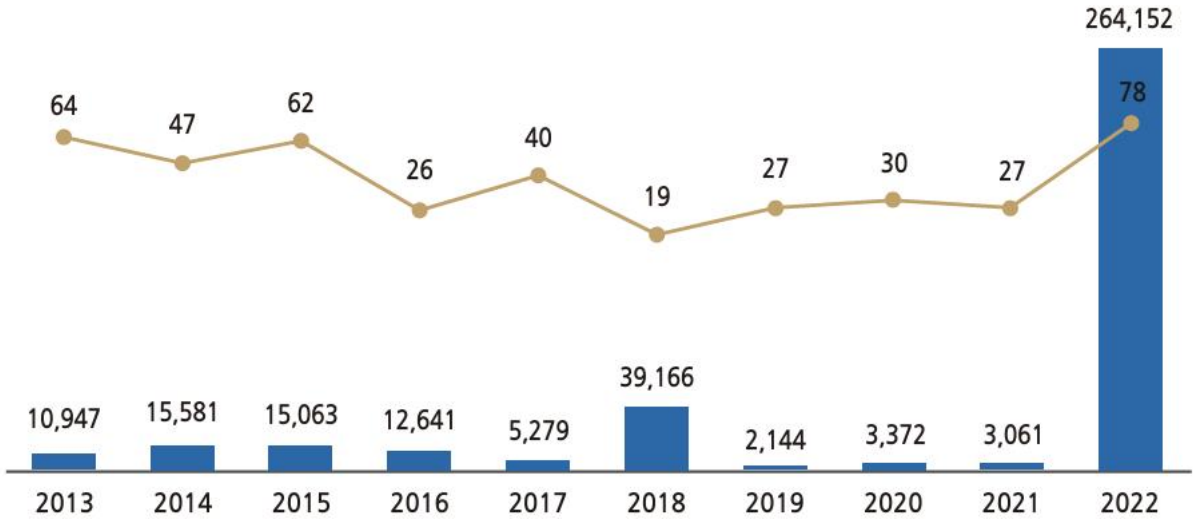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글로벌 에너지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이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2030년에는 그 비중이 5.5%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1년 원자력 공급량은 732Mtoe인데, IEA는 2050년에는 공급량이 1,147MToe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임.[12)]

2023년 4월 기준,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436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극동아시아 116기, 북미 112기, 서유럽 93기, 중앙·동유럽 74기, 중동 및 남아시아 32기, 남미 7기, 아프리카

11) 주요 계약내용으로는 엘다바 원전사업(이집트), UAMPS SMR 사업(미국), Chalk River 마이크로 원전 도입사업(캐나다), BNPP 연료 재장전(UAE) 계약 건 등이 있음.

12) 한국에너지공단, 「2024 KEA 에너지편람」, 2024. 5.

2기가 운영 중임.

2000년 이후 글로벌 원전기수 및 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이후 독일·미국·영국 등에서의 원전 폐쇄로 인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세계 원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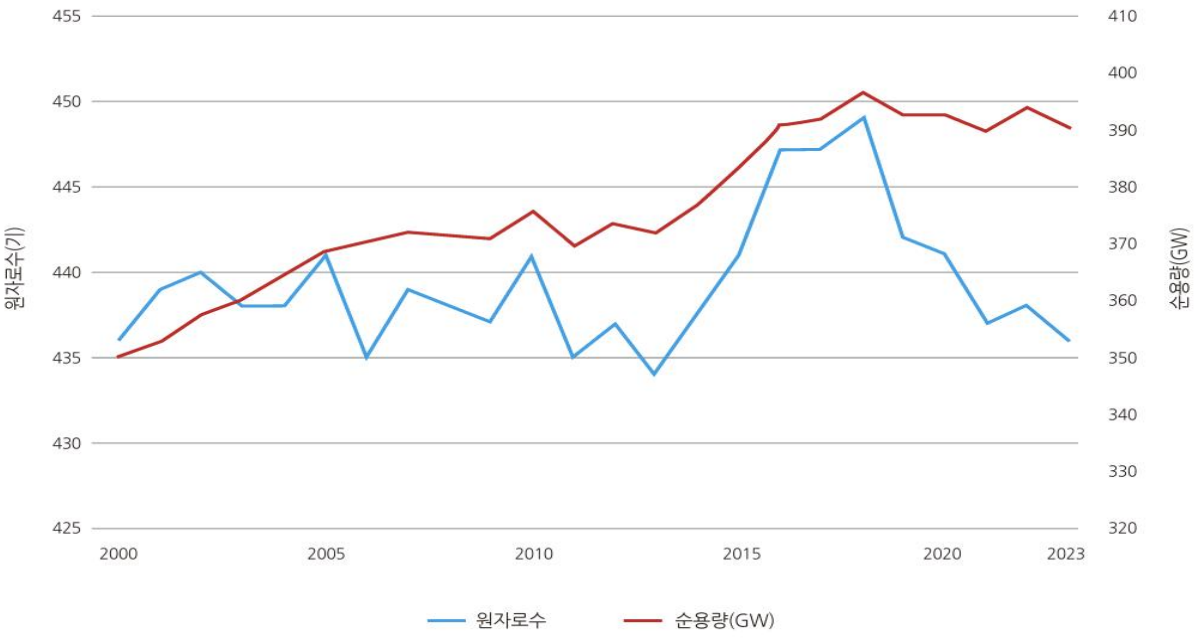

자료 : IAEA PRIS(2023.04.19.),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참조

한편,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13]를 개발하여 2030년대 초도호기 상업운전 개시 및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14]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개발 및 실증 신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을 위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 간 1조

13) SMR은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함.

14) 정부,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안)」, 2024. 5.

6,49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R&D 및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각국에서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action Act: IRA)'(2022년 8월) 등을 통해 가동원전들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특히, IRA 제정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가 투입되기로 결정되었는데, 가동 중 원전과 신규 및 차세대 원전 등에 대한 생산 세액 공제가 포함되어 있음.

프랑스는 2021년 10월 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SMR 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에 2030년까지 10억 유로 투자를 발표하였음. 일본은 2023년 2월 '선진 원자로 개발 공정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자국의 기술 성숙도에 맞춘 선진원자로 개발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

혔음. 영국은 신생기업의 SMR 산업 진출지원을 위한 미래 원자력 활성화 기금(FNEF)으로 1.2억파운드를 배정하였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2) 종합 검토의견

□ 국가전략기술에 특정 기술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핵심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국가전략기술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기술 분야를 추가할수록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다변화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정된 재정자원 하에서 보다 다양한 기술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할수록,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 일부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수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확대될수록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R&D 지출 및 시설투자 비율이 높아져 세수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산업에서 세제혜택의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와 유사한 기술분야의 범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각 산업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마.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박성훈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8 신설) ○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 ○ 공제율: 대·중견 15%, 중소 25% ○ 적용기한: 2027.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지급한 분부터 적용

*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공제율: 15%, 중소기업 공제율: 25%)를 신설하려는 것임.

□ 법 제10조에 따른 R&D 세액공제 중 일반분야 R&D 세액공제는 R&D 직원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세액공제는 대상에 R&D 직원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등이 포함되지만,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보다 세액공제율이 낮은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지원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 비용도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과 같이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주요 비용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해 연구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일반분야 R&D 세액공제율(대기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을 적용받아 지원규모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가 신설되면 더 높은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적용받아 지원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현행 제도상 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개요]

(단위: %)

구 분		공제율			비 고
		대	중견	중소	
현행제도	일반 R&D	2	8~15	25	국가전략기술 등 모든 기술에 대해 연구시설 이용료가 대상에 포함
	신성장·원천기술 R&D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R&D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는 대상에 포함 ×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15		25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신성장·원천기술 R&D를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 R&D 세액공제로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이미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 다른 산업보다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소기업은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와 기존 일반분야 R&D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25%로 동일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재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료는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지원 중인데, 개정안은 신설하려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법 제10조에 따른 R&D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구시설 이용에 대한 중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배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박성훈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윤덕의원안)

현 행	박성훈의원안	박수영의원안	김윤덕의원안
□ <신 설>	□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 신설)	□ 이스포츠대회 운영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4 신설)	□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 신설)
	○ 공제대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의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공제대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의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으로 한정	○ 공제대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의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공제율 - 20%	○ (좌 동)	○ 공제율 - 경기의 5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경우: 30% - 그 외: 20%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미적용	○ (좌 동)
	○ 적용기한: 2029.12.31.	○ (좌 동)	○ (좌 동)
	○ 시행일: 2025.1.1.	○ (좌 동)	○ (좌 동)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운영 비용부터 적용	○ (좌 동)	○ (좌 동)

*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박수영의원안 2024. 8. 21. 발의(의안번호 3033), 김윤덕의원안 2024. 10. 30. 발의(의안번호 5069)

□ 3건의 개정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안과 박성훈의원안에 따른 공제율은 20%이며, 박수영의원안은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으로 한정하여 이스포츠 경기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박성훈의원안과 차이가 있음.

김윤덕의원안에 따른 공제율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30%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20%임.

□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22년 규모는 22조 2,149억 원으로 2021년 20조 9,913억원 대비 5.8% 증가했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확대로 게임시장이 2020년에 21.3%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1.2%에 이어 2022년은 5.8%를 성장하여 성장률 자체는 둔화 추세이기는 하나 성장 중임.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2013~2022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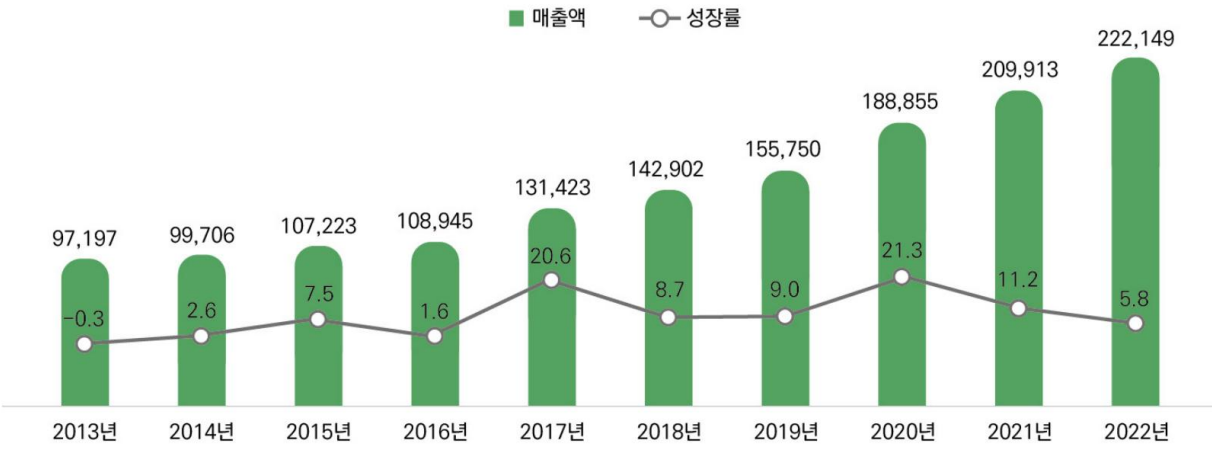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게임시장은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PC 게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 추이 (2019~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PC 게임	48,058	△4.3	49,012	2.0	56,373.0	15.0	58,365	3.0
모바일게임	77,399	16.3	90,311	16.3	121,483	34.5	130,720	7.6
콘솔게임	6,945	31.4	10,925	57.3	10,520	△3.7	11,202	6.4
아케이드 게임	2,236	20.6	2,272	1.6	2,733	20.3	2,976	8.9
PC방	20,409	11.6	17,970	△11.9	18,408	2.4	18,762	1.9
아케이드 게임장	703.0	2.4	365	△48.1	396	8.6	437	10.4
합계	155,750	9.0	188,855	21.3	209,913	11.2	222,149	5.8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3.6% 증가한 89억 8,175만 달러(11조 6,040억원)로 집계되었음.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액	6,411,491	6,657,777	8,193,562	8,672,865	8,981,751
증감률	8.2	3.8	23.1	5.8	3.6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0% 성장하였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산업 규모가 감소하였고 2022년은 2021년 대비 44.5% 상승하여 산업규모 감소분을

초과하여 성장하였음.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2015~2022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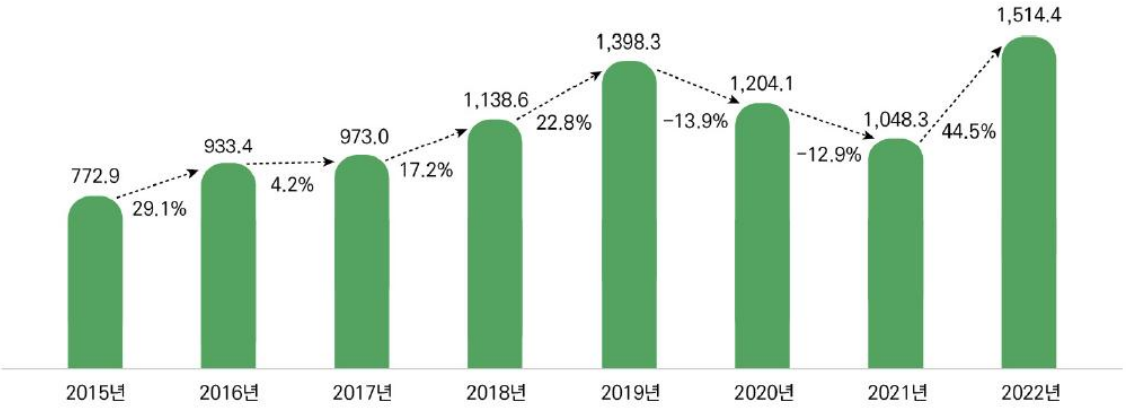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2년 기준 전체 산업규모 1,514억 4,000만원 중 게임단 예산이 963억 원으로, 전체 산업 규모의 63.6%를 차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스트리밍 매출 335억원(22.1%), 상금 216억 4,000만원(14.3%) 순으로 집계되었음.

[이스포츠 산업규모 세부 현황(2021~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산업규모	1,048.3	1,514.4	44.5
상금규모	190.8	216.4	13.4
게임단 예산	606.5	963.0	58.8
스트리밍 분야	251.0	335.0	33.5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2년 이스포츠 대회 수는 전년 대비 92개 증가한 220개로 나타

났고, 상금 규모는 216억 4,000만원으로 2021년 190억 8,000만원 대비 13.4% 증가하였음.[15]

[이스포츠 대회 및 상금 규모(2021년·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대회 수			상금 규모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합계	128	220	71.9	190.8	216.4	13.4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편, 이스포츠의 근거 법률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가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16]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17]

15) 조사대상은 글로벌 종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 대회 또는 우리나라 소속 이스포츠 주체가 개최하는 대회임.

16) 종목선정 기관은 한국e스포츠협회로 지정되어 있음.

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2024년에는 전문종목 6개·일반종목 2개·전략종목 2개·시범종목 1개 등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종목은 이스포츠 산업지원센터[18]에서 지속 가능한 이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대회 종목 채택 및 행정지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이 지원됨.

[2024년 이스포츠 선정 종목]

종목구분		종 목 명	종 목 사	비고
정식 종목 (8)	전문 종목 (6)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 게임즈	외국법인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	
		베틀그라운드 모바일	㈜크래프톤	
		FC 온라인	넥슨코리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넥슨코리아	
		발로란트	라이엇 게임즈	외국법인
	일반 종목 (2)	스타크래프트2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외국법인
		이터널리턴	님블뉴런	
전략종목 (2)		도타2	밸브 코퍼레이션	외국법인
		스트리트파이터6	캡콤	외국법인
시범종목(1)		FC모바일	넥슨코리아	2026년까지 심의
자격취소유예		서든어택	넥슨코리아	2026년까지 심의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 이스포츠 산업지원센터는 한국e스포츠협회로 지정되어 있음.

종목구분	종 목 명	종 목 사	비고
(3)	하스스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2026년까지 심의, 외국법인
	크로스파이어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2026년까지 심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01호

2024년 선정 이스포츠 종목에 대한 30개 이스포츠 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년 이스포츠 선정 종목 대회 현황]

연번	국산/외산	종목사	대회명	대회 장소
1	외산(복수종목)	KeSPA	2024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전국결선 및 KeG 리그)	각지역/아산이순신체육관
2			2024 e스포츠 대학리그	온라인/부산이스포츠경기장(결승)
3			2024 이스포츠 동호인 대회	전국 42개 이스포츠 시설
4	외산	발로란트	2024 WDG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1~3	WDG스튜디오/부산이스포츠경기장(결승)
5			2024 발로란트 게임 체인저스 코리아 스테이지1~3	온라인
6	외산	철권8	2024 ATL 오픈 토너먼트	프릭업 스튜디오(서울)
7			2024 ATL(AFREECA TV TEKKEN LEAGUE) 시즌 1	PlayX4(일산)
8			2024 STL(SOOP TEKKEN LEAGUE) 시즌 2	프릭업 스튜디오(서울)
9	국산	이터널리턴	Eternal Return Masters 2023 Season 2 Phase 1~3, 파이널	온라인/대전이스포츠경기장(결승)
10			이터널리턴 마스터즈 시즌 3 Phase 1~3, 파이널	온라인/경기 플레이엑스포(결승)
11			이터널리턴 마스터즈 시즌 4 Phase 1~3, 파이널	온라인/대전이스포츠경기장(결승)
12			이터널리턴 마스터즈 시즌 5 Phase 1~3, 파이널	온라인/미정(결승)
13	외산	스트리트	CPT 2024 월드 워리어: 한국 지역	온라인

연번	국산/외산	종목사	대회명	대회 장소
		파이터6	결승	
14	외산	스타크래프트	ASL(아프리카TV 스타리그) 시즌 17	비타 500 아프리카 콜로세움(서울)
15			KB리브모바일 2024 SSL AUTUMN 시즌1	비타 500 아프리카 콜로세움(서울)
16	외산	스타크래프트2	2024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2 리그(GSL) 시즌1	프릭업 스튜디오(서울)
17			2024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2 리그(GSL) 시즌2	프릭업 스튜디오(서울)
18	국산	배틀그라운드	2024 PWS: KOREA PHASE 1~2	온라인/비타 500 아프리카 콜로세움(결승)
19			PUBG LVUP 쇼다운: Phase 1, 2	온라인
20			PUBG LVUP 쇼다운: CUP	온라인
21			배틀그라운드 스매시컵 시즌 10, 11	온라인
22	국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024 펍지 모바일 프로 시리즈(PMPS) 시즌 0~3	대전이스포츠경기장
23	외산	리그 오브 레전드	2024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LoL 파크 / KSPO돔(결승)(서울)
24			2024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LoL 파크 /경주 체육관(결승)
25			2024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WDG스튜디오(서울)
26			2024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WDG스튜디오(서울)
27			2024 LCK 아카데미 시리즈 1~3회, 리그	온라인 및 광주이스포츠경기장
28			2024 LCK 아카데미 시리즈 4~6회, 리그	온라인 및 서울 오프라인 스튜디오
29	외산	FC 온라인	2024 eK리그 챔피언십 시즌 1, 2	비타 500 아프리카 콜로세움(서울)
30	국산	서든어택	2024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 1, 2	프릭업 스튜디오(서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이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스포츠 산업은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에 이스포츠 종목사에 의해 838.8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종목사 매출은 329.3억원에 그쳤음. 2022년에는 총 703.1억원이 투자되었으나, 매출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투자액의 28.3% 수준인 199억원만 발생하였음.

[2021년~2022년 종목사 투자액 및 매출액]

(단위: 억원, %)

연도	투자액(A)	매출액(B)	투자액 대비 매출액 비율(B/A)	B-A
2021년	838.8	329.3	39.3	△509.5
2022년	703.1	199.0	28.3	△504.1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편,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082억 4,90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7.8%로 4위이고, 1위는 미국(22.8%), 2위는 중국(22.4%), 3위는 일본(9.6%)임.

[세계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94,789	206,362	208,249	217,141	226,389	236,180
성장률		5.9	0.9	4.3	4.3	4.3

주) 2023년~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이에 따라 이스포츠 대회 시장도 함께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데, 운

영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스포츠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둘째, 김윤덕의원안은 비수도권에서 주로 경기가 개최되는 이스포츠 대회에 대해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스포츠 대회의 비수도권 개최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이스포츠 민간경기장은 9곳인데 모두 수도권에 있으며, 정부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비수도권의 지역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은 4곳임.

즉, 이스포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수도권의 이스포츠 대회 개최가 늘어나면 이스포츠에 대한 비수도권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른 스포츠 종목의 경우에는 대회운영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상 다른 스포츠는 이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기부 운영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10% 세액공제(장애인운동경기부는 20%)를 제공하고 있고,[19]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

---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에 대해서만 운영경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종목 간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둘째, 이스포츠 대회 운영은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홍보효과로 종목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이스포츠 대회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종목사를 지원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현재 이스포츠 종목사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라이엇 게임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 소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스포츠는 종목사 게임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데, 세제지원을 통해 이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해당 게임 판매 증대·관련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이어져 이들 소수의 기업들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셋째, 박성훈의원안과 박수영의원안은 지원범위에 외국기업이 만든 이스포츠 종목의 대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①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종목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②국내 이스포츠 산업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만든 종목 대회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